



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
- 환경보전, 축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,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
- 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

II.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『축산법』 제22조에 의한 축산업 등록자로서 신청일 현재 『축산물가공처리법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『친환경농업육성법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

2.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

- HACCP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
-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
- 다만,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원유수급관리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산농가는 제외한다.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
 - 초기 생산비와 소득 감소분 차액에 대한 일부 지원금

4. 지원형태

- 자금재원 : 농특회계
- 지원형태 : 민간경상보조, 국고 100%
- 지급대상 기간 : '08.11.1~'09.10.31
 - 동 기간동안 친환경(유기·무항생제) 축산물을 생산·판매한 거래내역서(세금계산서, 정산서 등)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.
 - ※ '09.11.1~'10.10.31까지는 '10년 사업예산에서 지원 추진
- 지급단가
 - 한우 : 유기 170,000원/마리, 무항생제 65,000원/마리
 - ※ 육우는 한우의 50% 감액 지급
 - 젖소(우유) : 유기 50원/L, 무항생제 10원/L
 - 돼지 : 유기 16,000원/마리, 무항생제 6,000원/마리
 - 산란계(계란) : 유기 10원/개, 무항생제 1원/개
 - 육계 : 유기 200원/마리, 무항생제 60원/마리
 - ※ 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% 증액 지급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가당 지급한도액 : 20백만원/년간
 -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%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
- 지급 기간 및 방법
 -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)
 - ※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
 -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,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



6. 사업추진 체계

업무흐름	시 기	주 요 내 용
① 지침시달 및 홍보	(2월초 ~ 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“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지침” 시달(농식품부) •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·홍보(농관원)
② 사업신청(축산농가)	(2.12 ~ 2.27)	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선정 신청(농관원 지원, 출장소)
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	(3.1 ~ 3.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(농관원 → 농식품부, 관련기관, 사업대상자, 3.15)
④ 이행상황 점검 결과 통보	(4.1 ~ 10.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(농관원 → 농식품부, 11.20)
⑤ 보조금 지급신청 및 소요예산 신청(1차)	(5.1 ~ 5.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08.11.1 ~ '09.4.30까지(6개월간) 실적자료 확인 • 보조금 지급 신청(사업대상자 → 농관원, 5.1~5.10) • 소요예산액 신청(농관원 → 농식품부, 5.20)
⑥ 보조금 지급(1차)	(6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조금 지급(농관원 → 사업대상자, 6월)
⑦ 보조금 지급신청 및 소요예산 신청(1차)	(11.1 ~ 11.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09.5.1~ '09.10.31까지(6개월간) 실적자료 확인 • 보조금 지급 신청(사업대상자 → 농관원, 11.1~11.10) • 소요예산액 신청(농관원 → 농식품부, 11.20)
⑧ 보조금 지급(2차)	(11 ~ 12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조금 지급(농관원 → 사업대상자, 11~12월)